



## **요약문서 #25: 공정근로기준법상 가정 의료서비스 제공**

이 요약문서는 가정 의료서비스업계의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특징**

나이나 병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개인을 위한 가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고용관계의 성질에 따라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동반자 서비스 (companionship service)"로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정식이나 실습간호원 (registered or practical nurses)과 같이 숙련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수당 지급 규정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정식 간호원은 전문가로서 면제될 수 있다. 등록된 간호보조원과 가정의료보조원도 일의 성질에 따라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예외될 수 있다.

### **규정**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은 공정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 가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원, 간호보조원, 가정의료보조원과 다른 개인들은 "가사 서비스 고용"의 정의에 해당된다.

개인가정에서 고용된 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면제규정의 모든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정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지급규정에서 면제된다. "동반자 서비스"는 늙거나 육체.정신적 병으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동무가 되주며,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늙거나 병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준비, 장자리 만들기, 세탁과 다른 유사한 개인적인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가사일도 포함되는데 이 때 주당 총근무시간의 최고 20%를 넘지 말아야 한다. 20%가 넘을 경우는 근로자의 모든 일한 시간에 대해 공정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동반자 서비스"는 정식.실습 간호원과 같이 숙련된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식 간호원은 공정근로기준법의 파트 541 에 정의된 월급제나 서비스당으로 임금을 받고 간호원의 임무를 수행했을 경우 임금규정에서 예외된다.

간호원과 같이 숙련된 노동자를 제외한 개인들이 비정규적으로 아기나 어린이를 돌봐줄 경우 베이비시터가 아닌 동반자로 간주되 면제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고용된 가정에서 거주하는 적용되는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규정에 적용되나 오버타임 지급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 **흔한 문제점들**

육체적 병이 있는 고령자의 동반자로 고용된 근로자가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일반 가사일에 사용했을 경우 이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주당 40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 배를 지불받아야 한다.

어린이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어린이가 육체.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았으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 작업활동은 동반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 법규에 포함된 정식사항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임금 및 시간에 대한 공문서는 전화번호부에서 미연방정부란에 기재된 가까운 임금 및 시간과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연방 노동부 무료 전화 1-866-4USWAGE 로 전화해 얻을 수 있다.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